

第 65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 '96. 8. 12. ~ 8. 14. )

忠清北道教育委員會

(會刊)會員委員會辦事處 同 誌

# 本會週年大會

(1981 - 1982)

忠誠非虛實委員會

# 목 차

1996 • 8 • 통권 제48호

I.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3
II.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
III.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35
IV. 부 록	
▶ 의사일정(안) .....	39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변경계획안 .....	41
▶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	49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65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8월 12일 (월요일) 15시 00분

## 議事日程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강인형)
2.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길위원 외 3인 위원 발의)
5.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6.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5시 00분 개식)

###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제65회-제1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5시 02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8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같은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6-7호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제6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96년 7월 24일 충청북도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7월 2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결의안은 교육부등 관계요로에 전달한 결과 교육부장관과 정부합동 민원실장으로부터 관련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공동의 반대 노력을 계속하자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96년 8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과 '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나, 금일 위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금회에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과 김정길위원외 3인으로부터 '96년 8월 7일 발의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박동기위원님께서도 현재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금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실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4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의 처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 0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길위원 외 세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김정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눔)

● 김정길 위원

김정길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인 8월 13일 15시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교육감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각 국장·담당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한 바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있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15시 08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제65회-제1차]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 1998년도 신설 예정인 청주 상암초등학교 외 2개교의 부지 3만 8,040.2㎡를 매입하고 청주농고 첨단실습시설인 본사 신축 945㎡, 보은농·공고 기숙사 신축 1,859.8㎡, 옥천 청산중학교 강당신축 708㎡ 등 총 3,512.8㎡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은 폐교된 충주 강천초등학교, 단암분교장 외 1개교의 부지 2만 297㎡와 건물 1,642.34㎡, 공작물 11점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 별첨2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설명자료 : 별첨3

(끝에 실음)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는 오는 8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11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정길, 이기수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정길, 이기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중에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후 3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안병일, 이경운

0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 별첨2
-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변경계획안 설명자료 : 별첨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8월 13일 (화요일) 15시 03분

## 議事日程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5시 03분 개의)

### ● 의장직무대행 조일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아시다시피 의장님께서 서울에 의장협의회 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현장방문을 마치시고, 쉴 시간도 없이 회의를 속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탓해 주시고 끝까지 오늘의 회의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금일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부교육감께서는 금일 범죄예방지원공사위원 청주지역협의회에 참석하셨고, 그리고 중등교육국장께서는 '96년도 초·중등 영어교사 미국 현지 연수단을 인솔하신 관계로 회의에 출석하실 수 없음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5시 05분)

● 부의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장래의 계획 및 현장 현황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발전적인 충북교육을 추구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행요령과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는 질문을 질문하실 위원님들 의석 순에 따라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질문후 관계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본도 교육위원회 의회규칙 제23조에 의해서 20분 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답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사오니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김정길 교육위원입니다.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재현의장님, 김영세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위원

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조치에 이어 금년 2월 9일 후속조치로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확대와 함께 고등학교와 직업훈련기관이 연대하여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내 8개 공업계 고등학교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 교육체제 운영의 현실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공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장에 대해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시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큰 뜻이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충북 도내 8개 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2+1 체제 교육도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2년간은 학교에서 학업과 이론을 3학년 들어서 1년간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1 체제 교육중 1체제 운영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현장에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능사 자격증까지 획득하여 학생들을 훌륭한 기능

인으로 배출코자하는 교육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와 조사에 의하면 1체제 운영이 실습 대상업체 선정에 서부터 업체별 학생배정, 현장지도 및 추수 지도,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생에 대한 관리, 1체제 운영에 따른 잉여교사 활용등 무엇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실습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인데 실습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산학협력업체가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합당할 뿐 아니라 경영이 건실하고 교육적 환경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내 8개 실습중인 공업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낸 73개 업체를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호의 대상이 될만한 정부투자 업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하는 연구소 등 한 곳도 없고 그나마 몇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경영마저 부실한 부도 일보직전인 중소기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등 실습생들을 위한 교육적 여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현장지도 강사의 이름도 밝히지 않는 등 준비가 소홀할뿐 아니라 기숙사를 비롯한 후생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체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월 3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습대상업체를 가능한 국가기관 산업체나 연구소 또는 이름있는 건실한 업체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인데 이는 실습생들이 정규 훈련과정을 마치고 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대부분 해당 업체에 취직을 하기 마련이어서 기왕이면 당초부터 좋은 산업체를 골라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중에 공업고등학교 학생이 있다고 볼 때 기왕이면 대우도 좋고 건실한 회사에 취직시키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된 그 소망일 것입니다.

경영도 부실하고 교육적 환경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보수도 적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며, 현장실습이 전공과도 무관한 그야말로 단순 노동으로 배울 것도 없는 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서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학생들이 실습을 나간 업체에 취직을 한 다해도 2,3년이면 되돌아 오는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합니다.

이는 당초부터 학생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업체에 내보내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 2+1 교육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습대상업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후 학교 실무자와 해당 학과 전문 교직자가 협의하여 건실하고 교육적 여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를 선정후 실습생을 파견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은 충북 교육청이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업고등학교에는 학교별로 진학 취업정보실을 설치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여 전공과목별 실습대상업체에 대한 정보나 자료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일선학교에서는 산업체가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 인정을 받았다는 것만을 믿고 학생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이로 인해 부실한 기업체에까지 학생들을 추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천 공업고등학교에서는 금년들어 실습생을 보낸 동아 엑스선 기계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실습생들을 복교 조치한 일이 있으며 자화전자를 비롯한 여러 업체들은 여러가지 교육적 여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중소기업체가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메꾸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 산업체로 인증을 받아 놓고는 저임금의 실습생을 유치하기 위해 공업학교에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체제 교육운영에 있어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어느 산업체에 어느 학생을 선발하여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현장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산업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행여부, 학생들에 대한 적성검사등 여러가지 일들이 교육적이며 과학적으로 짜임새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방식이나 지침 또는 기준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업학교 학생이 1체제 운영에 따라 업체를 선택하여 현장실습을 나가는 일은 어쩌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1체제 교육운영은 철저하고도 과학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도내 8개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을 실습현장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좀더 좋은 기업체에 전공과 적성을 살려 장래를 생각해 실습을 보낼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뒤에 2+1체제 운영은 해당 학교장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1체제 운영에 관한 교육청과 해당 학교간의 공문 수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육감께서 확인 검토하여 결

재한 공문은 최근 수개월 내에 불과 몇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등교육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교육의 수장이 2+1 체제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펼쳐 나갈수 있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직접 결재하신 공문 내용도 단순한 일상업무에 지나지 않아 충북교육청이 2+1체제 교육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2+1 교육체제에 대하여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수 있도록 8개 공업학교의 교장과 학과주임, 학생대표와 학과별 전문교직자 및 업체대표들을 망라한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충북교육청이 1체제 운영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있는지 몇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옥천공고 기계과 백성대 학생이 두원냉기회사에서 손가락 2개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내용은 기계과 학생으로서 본연의 현장실습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 실습장도 아닌 작업장에 파견되어 전공분야도 아닌 제품을 운반하던 중에 기계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 사고는 공고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나타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에서는 보고나 받고 현장안전에 주의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제천 광산공고의 조대명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오른쪽 손목을 절단하는 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올해 전문대학이라도 가려고 했으나 불구의 몸이 되어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부와 국립교육평가원, 국립특수교육원등에 알아본 결과 조대명 학생은 장애인 복지법 제19조 및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특별전형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에게 이러한 내용을 즉각 알려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지 않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진학지도에 유능한 교육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자처하는 충북교육청이 관계법도 모르고 있었던 말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조대명 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을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명문대학에 응시코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공장 근로자나 될 학생이니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백성대 학생과 조대명 학생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

[제65회-제2차]

실이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청이 2+1 교육체제 운영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2+1 교육체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교육청은 관련시행령, 규정, 운영지침과 각종 장학자료, 기업체에 대한 자료등을 수시로 수집하여 이를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2+1체제 현장지도일지』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마다 제각각입니다.

이는 교육청의 현장지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또 학교와 선업체간에 체결하는 훈련약정서에는 산업체에서 현장교육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그 계획서에는 교육훈련분야, 기간, 장소, 담당자, 지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되어 있으나 업체가 요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약정을 체결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약정서라는 것은 요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충북교육청 관내에서 제대로 요식을 갖추지 않은 약정이 체결되고 있다는 데 대해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2+1체제 현장지도일지』를 검토해 본 결과 실습생들이 산업현장에서 훈련계획서대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고 많은 학생들이 10시간이상 생산 현장에서 적응을 하지못해 중도 포기하고 복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나 기업체에 이렇다할 대책이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거나 현장실습 중에 복교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개인별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학과이수 미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면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고 1년간 개별적인 행동을 해도 졸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업료만 내면 졸업장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로인데 이게 교육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별도의 출석부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충북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2+1체제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아울러 활성화대책 및 철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교



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체제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현장지도와 잉여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에서는 1업체당 월평균 1회정도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지도를 하고 있는데 비해 어느 학교 교장은 한번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장만 주면 되는 학생들이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들까지 관심이 없으니 교육청에서야 관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2+1체제 학생들에게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현장방문과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교사들에 대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학생들이 산업체로 실습을 나가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별로 할 일이 없게 되자 학교의 남아도는 실습실등에서 한가한 시간으로 일과를 보내는가하면 휴게실에서 잡담으로 하루를 보내든지, 자유로운 외출 또한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잉여교사는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활용하든지 보수교육을 시키든지

다른 학교로 단기 파견을 보내든지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인사운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체제 운영에 따른 예산운용에 관한 문제인데 학교별 예산배정을 보면, 금년도에 도내 8개 공업고등학교의 10개 학과 525명 학생의 산학훈련에 총 3억 1천만원 정도가 국고에서 지원되었으며 배정액 기준은 기존 시행학교 2,500만원, 신규시행학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육천공고의 경우는 130명 학생에 4,201만원이 배정된 데 비해 단양공고의 경우는 25명 학생에 5,561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학생은 많은데 지원예산은 학생이 적은 학교보다 적다니 예산배정 기준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학협동 예산의 배정근거와 이 예산의 구체적 사용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연말이 되면 도내 공업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취업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가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망도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물론 심지어는 휴게소판매인등 각 업소에서 의뢰만 오면 전공, 비전공을 따지지 않

[ 제65회-제2차 ]

고 학생들을 종용하여 내보내 놓고서는 100% 취업률 달성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교육계의 양심에 비취볼 때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교육청 발표를 믿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당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보은여상의 여학생은 실습기간 중에 승강기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일이 있었고 일부공고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에 집단 이탈한 일까지 있습니다.

충북교육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일은 무엇보다 학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장려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직업교육이 국민들로부터 매력에 있고 선호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산학협동 교육이라시고 거창하게 명분만 앞세워 어린 학생들을 단순 생산직의 현장에 내몰아 몇 푼 월급으로 혹사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로 볼 때 학교 교육이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2+1 교육체제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해부하고 올바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출신의 공고학생들이 훌륭한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고 좋은 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일은 충북교육청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2+1체제 운영에 대한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공직자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교육공직자의 윤리와 도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들어 연초부터 장학관이 부정인사에 개입했다해서 잡음이 일더니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가 잡부금을 징수하다 밀쟁이 나는가하면, 급기야는 서무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다가 구속되고, 선생이 어린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요즈음 세간에는 온갖 못된 짓은 교직자들이 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충북교육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몇몇 지역인사들로부터 교육계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최우선하라는 질책을 받고는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입니다.

집행부가 교직원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충북교육계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충북교육계에 위계질서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교직원의 도덕과 윤리회복은 인사권자인 교육감께서 교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청 및 학교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육감의 의지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직원의 도덕과 윤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직원의 도덕과 윤리회복을 위한 대책은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교직원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교직원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지휘 지시 공문을 1년에 몇번이나 시달렸으며 시달린 공문이 전직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며 직원들이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학생생활 상담교사가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교직원들의 학생에 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는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학생생활 상담교사들에 대한 자질향상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청 직원중 징계 또는 견책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들

어 근무지침에 문제가 된 교직원 및 직계상급자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과감하게 인사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 부의장 조일환

원체 김정길위원께서도 저희 충북교육을 걱정하시고 질문시간 20분을 다소 초과하셨습니다.

우리 공업교육의, 특히 현장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작금의 충북교육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경운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발언대로 나눔)

● 이경운 위원

교육위원 이경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의장님을 대리한 조일환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교육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교육감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옛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자의 외길을 40년에서

50년 가까이 한 교육자들이 명예로운 퇴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퇴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설계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교육과정 연수라는 것을 단재교육원에서 3일간 20시간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일 만원씩, 즉 3일이면 3만원을 가지고 사회적응교육 연수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받고 온 퇴직교육자들에게 어떠한 예우와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의 개인 소견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교육을 받고 나온 퇴직예정 교장, 교감,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본 즉 별 도움이 못된다고 하는 항변이며 이렇게 퇴직자들을 예우할 수 있느냐 하는 불평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와 계획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이 퇴직예정 교사들에게 항변과 불평의 소리가 된다고 하면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반 내무직을 보면, 사무관급 읍·면장이 상이면 퇴직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며 위로하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지요 본 연수는 예산을 증액하여 상당한 예우 차원의 연수를 하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운영방법상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침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간교육 7월 29일자 신문에 의하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학생수 5,500명이하 지역교육청 21곳을 연차적으로 통·폐합 시킨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하며 충북도 한곳, 즉 단양지역이 대상지역이라고 발표되었는데 우리 도의 교육 총수인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보와 앞으로의 소신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은 간략하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운위원 자리로 돌아감)

● 부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두분 위원님들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론 정기감사나 행정질문의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특히 김정길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업고등학교에 관한 사항, 또 기타 현안이 방학이 끝나며는 집중적으로 현장실습에 임해야 되고 이러한 시대성 때문에 오늘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집행청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관촬겠습니까? 바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예”하고 말함)

그러면 지금부터 좌석을 앉은 체로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조일환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어제 교육부 현장방문평가단이 본도를 방문하여 특색사업의 현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교육개혁의 추진의지와 실제 운영사항을 점검함에 있어서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어 원활하면서도 순조롭게 마칠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염려와 성원을 마음으로부터 심도 있는 교육행정질문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 2.1체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중 기술 및 진흥인력 양성제도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산업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 현장교육은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97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레 시범기간입니다.

그리고 '97년후에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아 대책을 수립하여서 확정지를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이 그러합니다.

현재 2.1체제 운영은 중앙의 지침에 의하여 희망학교, 희망학생에 한하여 각 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의 형태는 전국이 대동소이한 현상입니다.

도교육청 업무가 방대하고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처리등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 운영지도와 취업 및 추수지도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전결규정에 따라 해당 과장이 처리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국 광산공업고등학교 조대명과 옥천 공업고등학교 백승대 학생의 산재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당시 보고 절차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광산고등학교 조대명 학생은 본인이 교육감 취임 이전에 산재가 났던 것이고, 또

[제65회-제2차]

옥천 공교 백승대 학생은 금년에 산재가 났는데 이 보고 체제가 제대로 원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까지 신속하게 보고가 안 됐던 걸로 지적됩니다.

보은 상업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도 본인 취임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때문에 전임 교육감이 이미 보고를,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하여는 담당자로 하여금 학생에게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회사측과 협의 조속이 처리 되도록 지시하겠으며, 서면보고가 없었던 광산공교와 옥천공교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특례 입학에 관하여도 학생들의 현장실습중 산재를 당한 학생이라 하여 대학의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원서를 제출하여 선정이 되어야만 그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특례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 의하며는 광산공교의 조대명 학생은 작년도 산재사고가 일어나서 치료를 하는 도중에 입학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가 다 끝나야, 치료가 다 끝나야 장애자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자 판정을 받아야 또 자기가 수속을 해가지고 장애자로서 등급을 받아야

지 특례입학이 되지 입학시험 당시 치료가 안 끝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장애자로서의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실기를 한 것이나 금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95학년도 당시 한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산 공업고등학교 조대명 학생은 대학입학 전형 기간동안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특례입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의 근무기강확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회의마다 또 연수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공문지시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로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여 교직의 긍지를 가지고 근무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김정길위원께서 지적한 매우 아픈 내용. 교직원들이 마치 사고의 본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충청북도에 공무원이 12,000명이나 교직원은 13,000명입니다. 그 많은 숫자에요. 사고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보다는 더 선량한 선생이 많이 있다는 것도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선 교육기관에 일부 교직원이 공직자로서의 도덕과 윤리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본의아니게 무리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차후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직사회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복무감사를 통하여 근무기강확립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사한 발생시에는 당사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수 및 다수인 집회시 본인을 포함한 관계관들의 시간을 마련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식개혁을 통한 자발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보시기와 관계없이 인사조치하고 있으며, 그러나 교원의 경우는 학기중에 교과담당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기말에서야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부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징계 및 재판결과에 따라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예외 없이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고의 2+1체제 운영사항과 교직원의 근무기강확립대책, 그리고 상담교사의 자질향상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 등에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관으로하여금 소상하게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윤위원님이 질문하신 퇴직예정자 사회적응연수는 이것은 중앙교육연수원에

서 실시해 오던 것을 '95년부터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퇴임예정자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퇴직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설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의 마련이나 예산확보, 참여 희망인원이 적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일반행정 공무원은 외국여행도 많이 보내는데 이 교육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이 말씀인데,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교육공무원은 정년 전에 외국여행의 길은 모두 다 한번씩은 다 겪었습니다.

정년 때까지 외국여행 안갔다 온 분이 없습니다.

한번씩은 다 겪어보고 현재 또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그 많은 선생님들 정년에 해당되는 분들을 특대우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예산 여유가 없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심의 하면서도 실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수의 운영결과와 효율성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교직자는 다른 공무원의 정년과 달라서 만 65세까지

하게 됩니다.

또 상당한 지적 수준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만 65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67세까지 들어갑니다.

그 후에 노후설계나 사회적응교육이 별도로 필요할까 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굳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앞으로 제도개선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침에 대하여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95년도 하반기 추진과제로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교육부의 통·폐합 방침이 결정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 교육부에서는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지침이나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통보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통·폐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관계관으로 하여금 더 소상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부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개혁평가단이 본도를 전국에서 1차로 심사를 어저께 늦게까

지 마쳤고, 그 시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실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진지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계관님께서 나오셔서 해당 업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인 9번, 10번, 11번에 대한 답변말씀과 이경윤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교직원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지도대책에 대하여 금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공직기강확립지침 3회, 총무과에서 공무원 복무자세확립지침 3회, 교직과에서 공무원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지도대책에 관하여 2회 등 모두 8회에 걸친 공문 지시와 각종 회의를 통하여 이미 시달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교원은 학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여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함으로써 신뢰



받는 교직원등을 조성하는데 지도목적을 두고 있으며, 둘째, 추진내용으로는 징벌수단으로서의 체벌, 제자사랑의 징표로서의 학생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 자극적인 언어 등의 품위 손상 행위와 부교재 선택등에 관련된 금품수수,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는 등의 금품수수 행위, 상습적인 도박 및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등을 금지토록하고 음주운전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토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도대책으로는 직원의 현직연수, 직장교육등 학교내 모임이 있을 때 학교장의 특별지도로 의식개혁을 통한 자발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군교육청별로 초청장학 정기장학지도 등의 장학활동 시에 전문직으로 하여금 특별지도를 강화토록 하며 각종 연수 및 다수인 집회 시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필두로 하여 국·과장 및 장학관들의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신뢰받은 교직원등 조성에 각자가 최선을 다해 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별 또는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여 소속 직원 스스로 불미스러운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복무감사를 강화하여 근무기강 확립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중대사한 발생 시에는 해당 교원은 물론 기관장 및 감독자도 엄중 문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 근무기강과 관련부서인 기감실, 총무과, 초·중등교직과, 초·중등장학과의 연계적지도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보완 수립하여 단절없는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지시공문을 몇회 시달하였으며 전달과정 및 숙지 정도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직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의 지시 공문은 '95년에 16회, '96년 현재까지는 10회 시달되었고 각종 회의, 연수회, 연구협의회 등 모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무자세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시사항의 전달방법입니다.

회의를 통한 전달방법으로는 교육장 회의에서 교육감이 지시한후 지역교육청별로 교장회의를 소집 전달하고 교장은 각 학교별로 소속 직원에게 전달토록하며 공문서를 통한 전달방법은 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에 전달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송달하여 각 자체별로 직원회에서 전달 또는 전직원 회람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수회나 집회시에 지시된 내용은 지역교육청별 또는 학교별로 전달 강습이나 출장 복명시 철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상 숙지 여부의 확인방법은 통상적인 행정과정을 통하여 각종 회의나 간담회시에

지시된 사항의 전달, 숙지여부를 파악하고 장학지도나 학교 방문시 직원 협의와 개별 접촉에 의하여 숙지사항을 점검하며, 복무기간 감사 시에는 지시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 4회이상 철저히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공직자 품위 관련 징계받은 직원은 몇명이며 징계 상급자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품위와 관련하여 '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징계 처분자는 초등교원 2명, 중등교원 1명, 일반직 4명으로 총 7명입니다.

그 중 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이며, 1명은 재판 계류중입니다.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징계 처분 및 감사결과 처분으로 인사조치 실시된 자는 전보 시기에 관계없이 전보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하고 있습니다.

직장 감독자에 대한 대책은 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징계결과 인사조치 실시된, 징계결과 인사조치된 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퇴직예정

자 사회적응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 정년퇴직 후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건강, 재산관리, 취미생활, 사회생활 등을 중점 교육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으로는 '96학년도 정년퇴직 대상자는 초등 77명, 중등 31명, 제 108명이며, 이중 본 연수를 희망하는 초등 28명, 중등 14명 제 42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기간은 '96년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비합숙으로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일반수강비와 강사수강등 연수경비에 174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퇴직자 사회적응 교육은 퇴직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의 연수로써 앞으로 연수 프로그램 소요예산 참여 희망자들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 ● 부의장 조일환

주로 우리 교직원의 윤리 복지 그리고 근무기강에 관한 현재의 내용과 그 대책을 초등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여를 기울이는 박재현 의장님을 대리한 존경하는 조일환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도 교육을 염려하여 12개항의 심도있는 교육행정 질문을 하신 김정길위원의 열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상담교사의 자질향상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수립 및 추진용의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상담교사의 자질향상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진로상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년 초에 진로상담 교육을 활성화 방안을 각급 학교에 시달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으며 두번째로 두 전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96년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감 및 상담교사 946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방향, 상담활동의 기법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세번째로 지난 1월 10일 충청북도 카운셀러협회 연체대회를 개최하여 회원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자의 역할과 자세,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 적용, 사랑의 성장 등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로 우리 도에서는 상담교사 자격증

을 가진 교사가 1,058명으로 중학교 10여학급이상 57개교와 고등학교 9학급이상 67개교 등 총 124개교에 124명의 진로상담 주임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고민이나 충고사항을 해소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들의 자질함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상담 우수사례집을 이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지난 4월 18일 YMCA주관 우리 교육청 후원으로 청소년상담 공개강좌를 열어 도내 중등 상담교사 236명이 참석하였고, 7월 5일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강연회에는 초·중고등학교 상담교사 349명을 참석시켜 상담기법 및 성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 진로교육 시범학교로 덕산중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말에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일반화하고 상담교사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중등장학과장 자리로 돌아감)

● **부의장 조일환**

수고하셨습니다.

상담교사에 대한 연수 수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발언대로 나눔)

●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제65회-제2차]

과학기술과장 백경흠입니다.

김정길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2+1 체제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1은 공고 2+1체제 운영에 있어 교육적 여건이 미흡하고 경영마저 부실한 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내고 있는 이유와 건설하고 교육적 여건을 갖춘 업체에 현장실습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의 기본 방향은 산업체 현장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당초 계획이나 실적에 구애받지 않고 희망학교라든가 희망학생에 한해서 '97년까지 시범실시 후에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학년도 본도는 8개교 5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96개교에 15,8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본법상 노동부로부터 승인된 직업훈련원이 설치된 업체는 대기업에 불과하여 많은 인원을 갖다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선호대상인 국가기관 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는 2+1체제 현장실습생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파견이 어려운 실정이나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산업

교육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건설한 산업체에 파견될 수 있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체 훈련원이 없는 업체에서는 현장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업체간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지침을 '96년 3월 7일자 실과 주임 회의에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은 영세한 기업체에서는 여건상 변태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 순회지도시 시정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97학년도부터는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된 산업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산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 2는 학생들이 적성과 전공을 살려 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실습지도의 체계적 운영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전공학과와 관련된 산업체를 선정,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현장교육계획이 수립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업체 선정은 현실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된 산업교육협회에서 적합한 산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는 건설한 산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통보된 산업체가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교육협의회 장에게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답사등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진로 정보를 입수 분석하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문요지 3. 교육감이 2,1체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공업학교 교장, 학과주임교사 또 학생대표, 학과별 전문교직자, 업체대표, 연석회의의 정례화를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답변말씀은 '94년에서부터 '97년까지 2,1체제운영 시범실시 기간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희망학교, 희망학생에 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 시·도가 대동소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전국 2,1체제 운영학교 교장, 실과주임, 기업체, 노동부 관계자 합동으로 공고 2,1체제 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또 '96년도에 교육개발원 주관으로써 공고 2,1체제 운영방안 및 시범운영 발표회를 1회 개최하여 2,1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96학년도 상반기에 지역 고등학교 학생대표와 교육감과의 대화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건의사항등을 수렴하고, '96학년도 도내 공

업계고등학교 실과주임 회의시 공고 2+1체제 운영 및 일반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 선정 및 훈련약정, 교육프로그램운영등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특히 공고 2,1체제 운영에 있어서는 시범기한이 끝나는 '97년도 말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확대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요지 4는 '95년도 제천 광산공업고등학교 조대명 학생과 '96학년도 옥천공고 백승대 학생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보고 받은 일이 있는가?, 조대명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유는?, 산재학생의 취업 및 상급학교 진학지도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면, '95년 10월 25일 발생한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에 조대명 학생과 '96년 4월 26일 발생한 옥천공업고등학교의 백승대 학생의 산재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당시 정식으로 서면보고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95년 12월 중순경 과학기술과 공과담당 장학사에게 익명의 부모로부터 유선으로 현장실습의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하여 문의해 와서 해당 학교를 추적해 본 결과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장학사는 한국광산공고 교감과

[제65회-제2차]

통화를 하여 위 사안이 발생되었음을 알고 '95년 12월 14일 재해 발생 경위 및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한 참고내용을 전송?등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담당장학사는 한국광산공고 교감에게 조대명 학생에 대한 처리,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옥천공고 백승대 학생에 대해서는 담당장학사가 '96년 5월 18일 산재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사고경위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구두로 연락을 받았으며 그에 대하여 학생 본인에게 하나의 불이익이라도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구두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 발생당시 정식 서면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광산공업고등학교 조대명 학생의 특례입학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며는, 산재를 당한 학생이라고 하여 대학의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법시행령 71조의2 6항 및 특수교육진흥법 10조에 의거해서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지체부자유, 또는 뇌성마비 등 장애를 지닌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원서를 제출하여 선정이 되어야만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특례입학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산공업고등학교에서는 증장학 81211-903

호로 '95년 9월 25일로 시행한 '96학년도 장애인 대학입학 대상자 선정계획을 '95년 9월 26일자로 접수한 바 있고, 전문대학 특별전형 기간중 조대명 학생은 그 시기에 치료중에 있으므로 특별전형 응시원서 제출용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제반서류중 장애자 등급 및 장애자 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애인 특례입학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산재학생에 대한 취업은 본인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관행상 해당 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업체를 알선하여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대학 특례입학 대상자에 대한 진학 업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과 81330-690으로 '96년 7월 19일자로 홍보토록 촉구한 바 있고, 앞으로 산재학생에 대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5는 공고 2.1체제에 있어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거나 중도포기한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은 2.1체제 학생은 자기 희망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하기 때문에 중도포기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중 일부 학생이 노작에 대한 기피현상과 적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하는 사례는 있을

니다.

2,1체제 학생중 중도포기한 학생들에 대하여 복교조치후 학교의 첨단실습기자제를 최대한 활용, 실습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며, 일반학생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복교조치후 정상 교육과정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가급적 현장실습중 중도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에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6은 공고 2,1체제 운영에 있어 잉여교사의 관리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요지는 교사배정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고 2,1체제 운영 학교에서는 운영학급이 1개교당 1,2학급만 운영되고 있으므로 관련학과 교사들은 타학년 및 잔류학급의 수업을 담당해야 하고 부분적인 운영으로 다수의 시간수의 경감은 있으나 잉여교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감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산업체 현장순회로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순회를 하는 것보다 담임 및 전공교과 선생님들이 순회하는 것이 생활지도 및 상담을 통한 인성지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교사중심으로 현장 순회지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다가 보니 가급적 학교의 장이 순회지도를 교장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일반 학생들이 현장학습에 임하는 2학기부터는 1,2학년 교과 담당교사와 3학년 교과담당 교사 간의 수업시간의 형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 조정을 해서 수업시간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7번은 공고 2,1체제 운영에 있어 산학협동 예산의 배정근거와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추진배경은 신경제 5개년 계획중 기술 및 진흥 인력양성 제고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근거는 산업교육진흥법 제18조 시설 및 기자제입니다.

제21조 현장연수 및 지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2,1체제 기자재 확충비, 그러니까 국고보조로서 교육부에서 과기 81332-87, '96년 3월 6일자로다가 3억 1,000만원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기준에 의해서 기존 운영학교는 교당 2,500만원, 새로 생긴 학교는 그러한 2,1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은, 그렇게 하고 남은

[ 제65회-제2차 ]

돈은 학교마다 그 학과 수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한 학과가 나간 학교가 있고, 두 학과가 나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수의 50%, 참여 학생 수의 50%, 이러한 배경근거에 의해서 배정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고 2,1체제 운영비로 역시 국고에서 똑같은 공문에 의해서 920만원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기준도 역시 참여 학교당 50만원씩, 또 참여 학급당 30만원, 그러니까 한 학급이 참여했으면 30만원, 두 학급이 참여했으면 60만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참여 학생 비율에 의거해서 또 이 예산을 배정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 2,1체제운영중 실과교사 기업체 현장연수 여비를 저희 지방비에서 368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각학교 공히 2명씩 5일간 연수를 하도록 해서 46만원씩 학교당 배정을 해 줍니다.

공고 2,1체제 현장지도비도 역시 지방비에서 1,324만 8천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로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질문요지 8은 공고 2,1체제 운영의 전면적인 검토와 아울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용의는?,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

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는 공고 2,1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계관의 행·재정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96학년도까지는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은 학교장 책임하에 선정했으나 '97년도부터는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된 산업교육협의회장에게 학교장이 업체추천 요청을 하여서 추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건실하고 교육적 환경이 양호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는 '97학년도까지 2,1체제 운영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 대책 수립하여 나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김경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미흡함이 없는지 걱정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일환

어떻게 우리 집행청에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좌석에서 교육감 “보충질의가 있으신가 봐요.”하고 말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위원님들께서 답변사항에 대하여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과 답변형식은 일문일답 형식, 그리고 편의상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고 위원님 좌석에서 앉아서 질의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하시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결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교육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것이 전부 공고의 학사관리 문제가 시범 실시 기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범 실시 기간중이기때문에 그러면은 그 관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범 실시 기간이면은 학생들을 아무나 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여러가지의 몇가지 사고 관계를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육계의 수장님인데 어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나 손가락도 아니고 손목이 잘려나가고 학생이 죽고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교육감님한테 체계적으로 보고가 안되던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이걸 이해가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가 안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그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97년도부터는 상공회의소가 산업교육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시켜가지고 공고생들을 거기 추천에 의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그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추천에 의해서 이제 실습을 나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에, 상공회의소 그 산업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공고생들을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산업체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 산업교육협의회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실습을 나갈 학생들을 갖다가 자원관계를 의뢰를 하고 상공회의소의 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준다 이겁니다. 업체를 통보를 해주면 학교에서 그 업체를 확인해서 분석해 보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이 맞느냐 하는 것을 심의해 본 다음에 그 후에 내보내 주고, 이러한 추세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 김정길 위원

그 계획은 좋으신데 말이죠. 과연 그것이

지금까지의 예의 실례를 봐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학교에 공문만 가며는 무조건 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 기업체에 다 보낸다 이겁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제가 깊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교육감님이하 관계관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내년도부터는 또 그런 기구가 또 존재가 되고 이렇게 하니 내년부터는 잘 될 걸로 믿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운영됐던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잘해주시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무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은 일선에다가 철저하게 좀 지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모든 교육신장의 일들이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겠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뭘 좀 여쭙 봤습니다마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이 왜 일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교사 자질문제, 지금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금 미흡한 곳이 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말

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학교에서 일선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안겠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제가 간단히.....

● 부의장 조일환

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눔)

● 교육감 김영세

김정길위원께서 참 충정어린 이러한 교육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다시 또 보충질문에 지적해 주신 것도 모두가 사리에 맞는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시범실시 기간이라는 것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범실시 기간에 서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등을 축출해서 시정하는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마땅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이 돼야겠죠. 또 하나 사고 보고에 대해서는 광산공고 조대명 학생에 대해서는 나 이전에 교육감 임기기 때문에 거듭 언급할 필요가 없고, 단지 옥천공고 학생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엄중 문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뿐이 아니라 각종 사고가 사실은 그저 대수롭지 않거나 하고서 보고 안되

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바깥 뭐 대소간에 조금만 일이라도 전부 일일이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심지어는 주말같은 데 보고가 되면 일개 장학사 수준에서 보고를 받고서 그냥 묻혀 버린 예도 있어요. 이런것등 등 다시한번 주의를 촉구해서 기강을 잡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김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적이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교육협의회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2,1체제를 강구한다는 것은 이제 그 협조기간이 다시 생겼다. 생겼으니까 거기서 바로 교장들이 산업기간을 잘 파악을 못하면 그 기간에서 열악한가 아닌가를 산업기관에 대한 것을 그 기관에다 문의해가지고 보내도 좋으나, 안보내도 좋으나, 보낼만한 곳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이런 협의기구가 생겼다는 것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간에 열악한 환경의 장소에 덮어놓고 보낸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계관으로 하여금 단속을 잘 해서 2,1체제에 대한 지도에 대해서 더 감독권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교사 자질문제는 사실은 지금 그 학생선도 방향이 상담활동만 잘되려는

다들 이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돼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의 모든 학생 사고라는 것이 아주 흉폭화 돼서 선생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정도의 사고도 나고 그러는 것 등이 사실은 우리 모두 너나할 것 없이 모두의 책임이라고 난 봅니다.

첫째, 모든 인성교육의 최초의 선생이요, 가장 훌륭한 선생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정교육의 터전을 잃은 이 마당에 학교교육이라도 그것을 떠내야 되겠고, 또 학교교육에서 감당 못한 것은 사회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상담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담선생님들의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고맙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 부의장 조일환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30분여 정회없이 이렇게 저희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오늘의 질의와 답변, 이것이 아마 충북교육에 밑거름이 돼서 오늘 의 어려운 우리 충북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제65회-제2차]

<p>이끌어 갈 것입니다.</p> <p>더구나 집행청이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강력한 시행에, 또는 앞으로의 개정의 그러한 의지를 밝혀 주셨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그러면 더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p> <p>오늘 마침 도의회에서 우리 김충식 위원께서 이 자리에 방청을 해주셨고, 또 언론여러분들께서도 방청해 주신 것을 위원님을 대신</p>	<p>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p> <p>이번에 질의에 대한 종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p> <p>그 동안 교육행정 질문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청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p> <p>이상으로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6시 33분 산회)</p>
---	---

0 출석위원 : 9명

부위원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8월 14일 (수요일) 11시 06분

## 議事日程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2. 기타안건 처리

## 附議된 案件

1.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6분 개의)

###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금일 이경윤위원 외 3인으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현장 확인을 거치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게 되겠습

니다.

1.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11시 07분)

###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해서 이경윤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위원 발언대로 나옴)

[제65회-제3차]

이경운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1996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충주교육청 소관 강천초등학교 단암분교장의 재산매각계획은 현장을 답사하여 살펴본 결과, 인근에 강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등 지리적 여건이 양호하여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재산을 매각할 경우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매각 계획수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차 지역개발 등으로 재산가치가 한층 증가될 전망도 있으므로 동 재산을 매각하기보다는 청소년 수련장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임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동 변경계획안 중 충주교육청 소관 강천초등학교 단암분교장의 토지 11,174㎡와 건물 786.93㎡의 공작물 6종에 대한 매각계획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운위원 자리로 돌아감)

참조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4  
(끝에 실음)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수정안에 대하여는 이경운위원께서, 원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모두 침묵)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본 건에 대한 수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하여 각각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침묵)

그럼 찬성에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8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2표 되겠습니다.

<p>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p> <p>따라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p> <p>동료위원 여러분!</p> <p>이번 회기 중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p>	<p>교육감 제출 의안의 심도있는 처리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p> <p>그리고 그동안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p> <p>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1시 14분 폐회)</p>
---	--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3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4





(별첨1)

# 議 事 日 程(案)

第65回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96.8.12-8.14(3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6.8.12(월) 14:00  15:00	<input type="checkbox"/>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b>[제1차 본회의 개의]</b> 1. 제6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 : 1996. 8. 12~8. 14(3일간)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b>[제1차 본회의 산회]</b>	
'96.8.13(화)   15:00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 방문 - 폐교매각재산 : 충주·영동  <input type="checkbox"/> <b>[제2차 본회의 개의]</b>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b>[제2차 본회의 산회]</b>	
'96.8.14(수) 11:00	<input type="checkbox"/> <b>[제3차 본회의 개의]</b> 1. 19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2. 기타안건 처리  <input type="checkbox"/> <b>[제3차 본회의 산회]</b>  <b>※ 폐 회</b>	



(붙임2)

의안번호	제 65- / 호
의년월일	1996. 8. 회 ( 제 회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6. 8. 2.

#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65-1

제출년월일 : 1996. 8. 2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안 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 주요 골자

- 대상기관 : 본청 및 청주·충주·옥천·영동교육청
- 내역

(단위:㎡/천원)

구분	당초		변정		증(△)감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23,825.8	4,606,370	61,866	16,880,219	38,040.2	12,273,849	
건물	89,089.22	63,209,095	92,602.02	65,746,773	3,512.8	2,537,678	
계	112,915.02	67,815,465	154,468.02	82,626,992	41,553	14,811,527	

· 처 분

(단위: m<sup>2</sup>/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231,199.9	760,059	251,496.9	1,021,506	20,297	261,447					
건 물	4,666.09	707,237	6,308.43	1,030,301	1,642.34	323,064					
공 작 물	-	0	-	8,788	-	8,788					
계	235,865.99	1,467,296	257,805.33	2,060,595	21,939.34	593,299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 m<sup>2</sup>/천원)

시군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유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본청	취득	건물	청주농고	돈사 신축			945	334,158	945	334,158	첨단실습시설 확보 (국고지원 사업)	1 쪽	
					보은농공고	기숙사 신축	1,859.8	1,610,180	1,859.8	1,610,180	자영농고 지원 사업 (국고지원 사업)	2 쪽	
							소계		2,804.8	1,944,338	2,804.8	1,944,338	
청주	취득	토지	(가칭) 농등 상암초등학교	학교 신설	10,954.8	2,372,940	10,954.8	2,372,940	10,954.8	2,372,940	'98년도 개교	3 쪽	
					(가칭) 평조 등 원평초등학교			11,249.4	2,842,582	11,249.4	2,842,582		4 쪽
					(가칭) 정덕중학교			15,836	7,058,327	15,836	7,058,327		5 쪽
충주	처분	토지	소계	폐교재산매각			38,040.2	12,273,849	38,040.2	12,273,849			
					강천초단암강교본			11,174	124,602	11,174	124,602	조분필요 (수용시설확충 사업에 투자)	6-9 쪽
					건물			786.93	213,324	786.93	213,324		"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천원)

시군	구분	재산별	기관명	사업명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유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충주	처분	공작물	강천초등암 학교교장 분	폐교재산매각			(6중)	2,810	(6중)	2,810	보존불필요 (수용시설확충 사업에 투자)	6-9 쪽		
							11,960.93	340,736	11,960.93	340,736				
유천	취득	건물	청 산 중	강당 신축			708	593,340	708	593,340	교육환경개선 (국고지원사업)	10쪽		
							9,123	136,845	9,123	136,845				
영동	처분	토지	초강초등중 학교교장 분	폐교재산매각			855.41	109,740	855.41	109,740	보존불필요 (국고지원사업 확보사업 투자)	11- 14쪽		
					건물			(5중)	5,978	5,978	5,978			
		공작물	소계			9,978.41	252,563	9,978.41	252,563					

제안 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96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변경계획안 내역 : 덧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관계법령(부분)발췌서

###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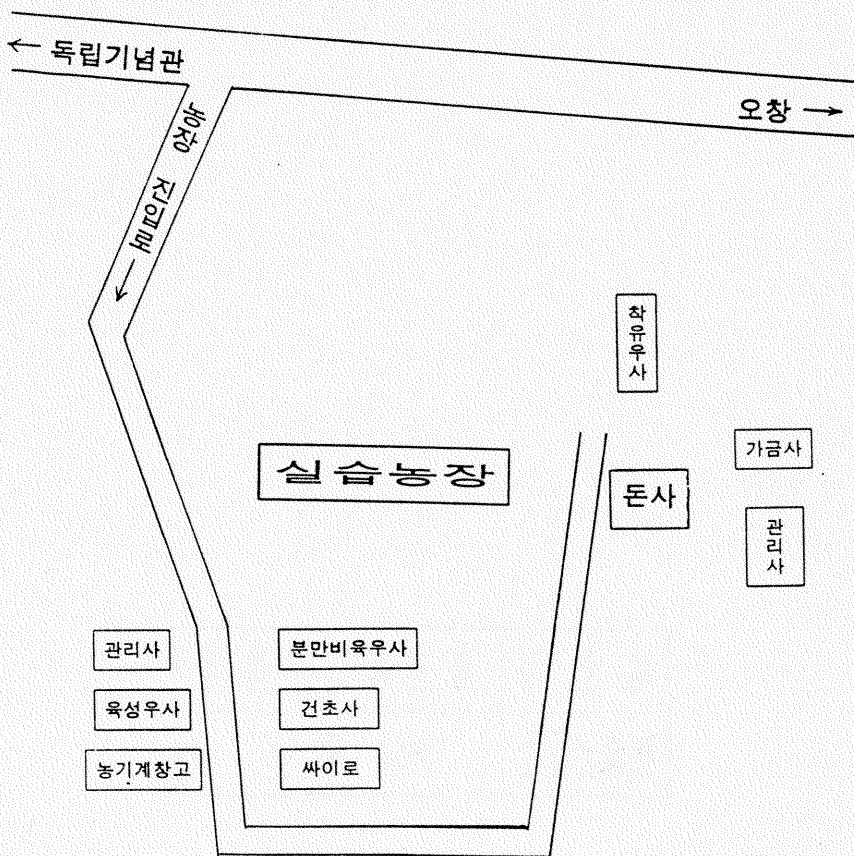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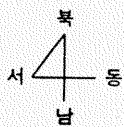
(별첨3)

'96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변경계획안  
설 명 자 료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6. 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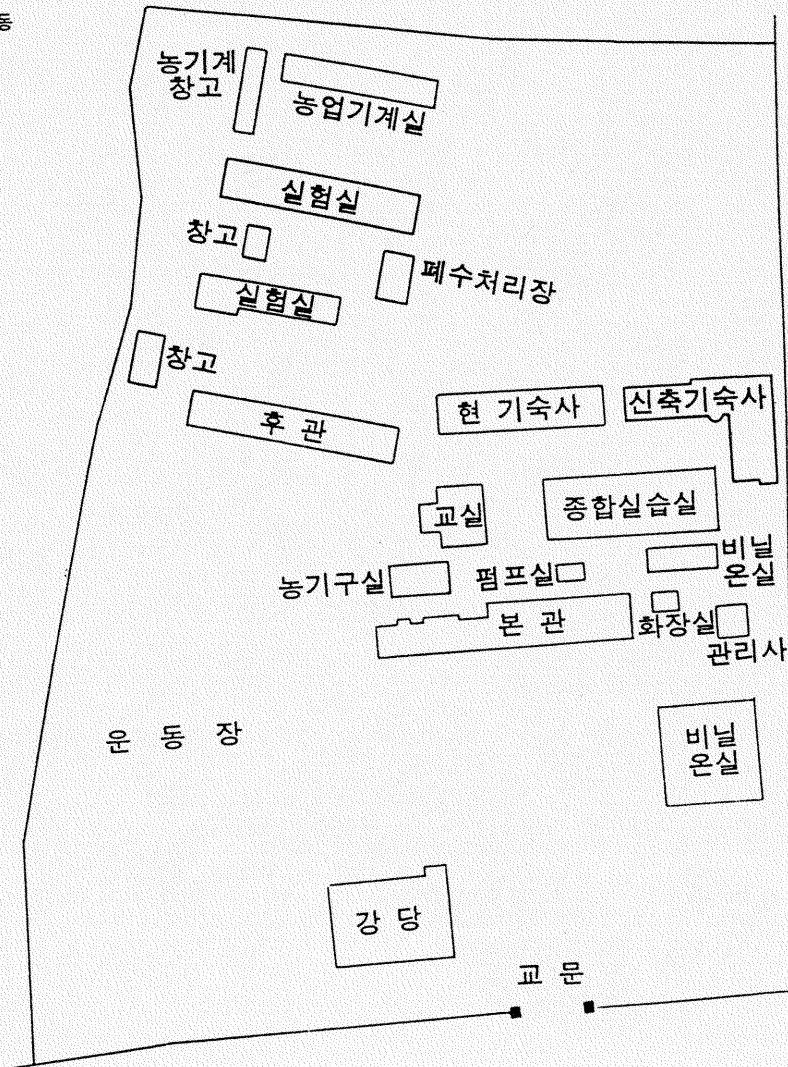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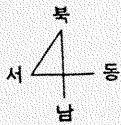
## 청주농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돈사	충북청원군오창 면성산리 (실습농장 내)	145 -21	철.콘. 라	945	334,158	첨단실습시설 확보 (국고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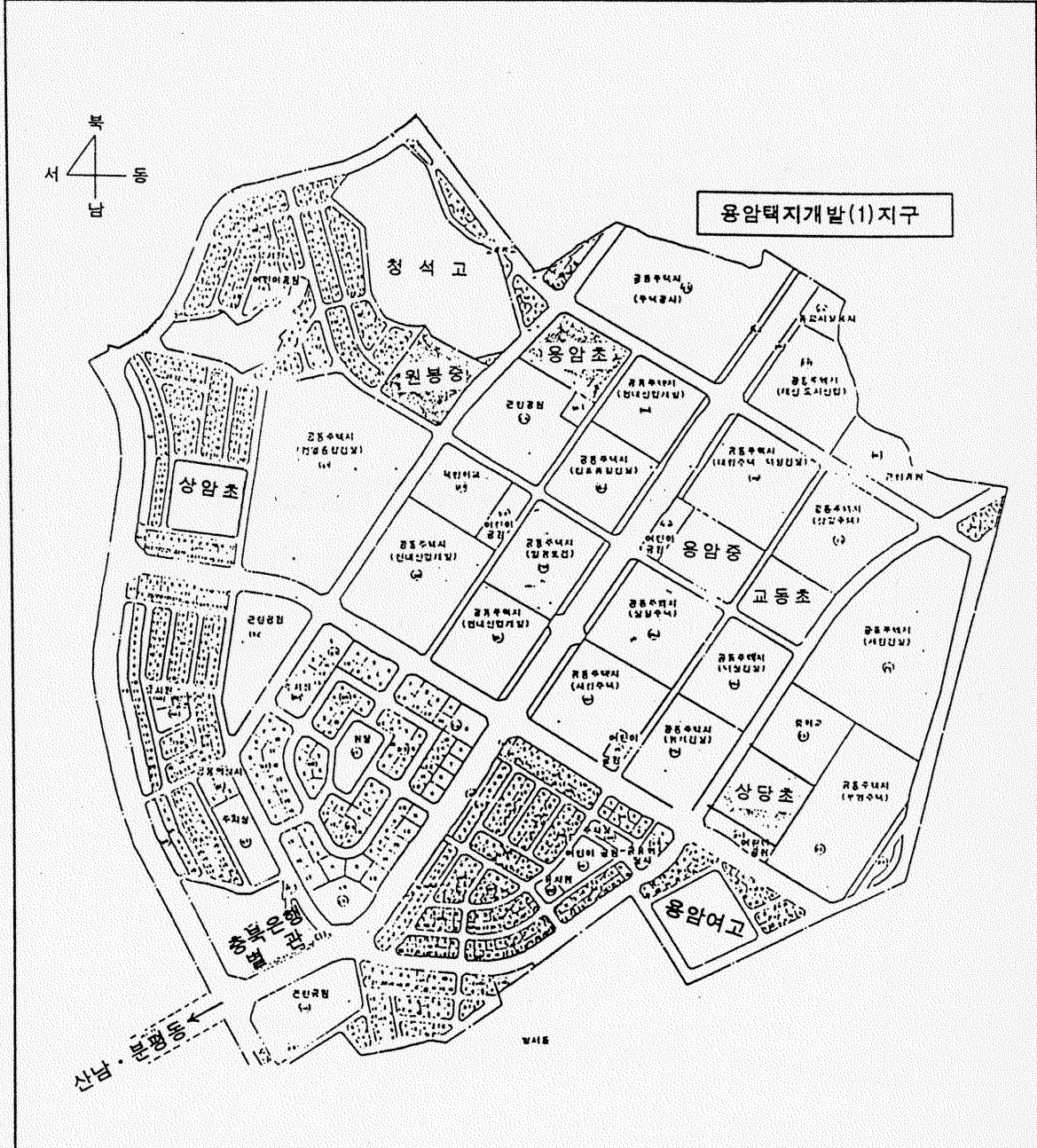
## 보은농공고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기숙사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00	철콘슬	1,859.8	1,610,180	자영농고지원사업 (국고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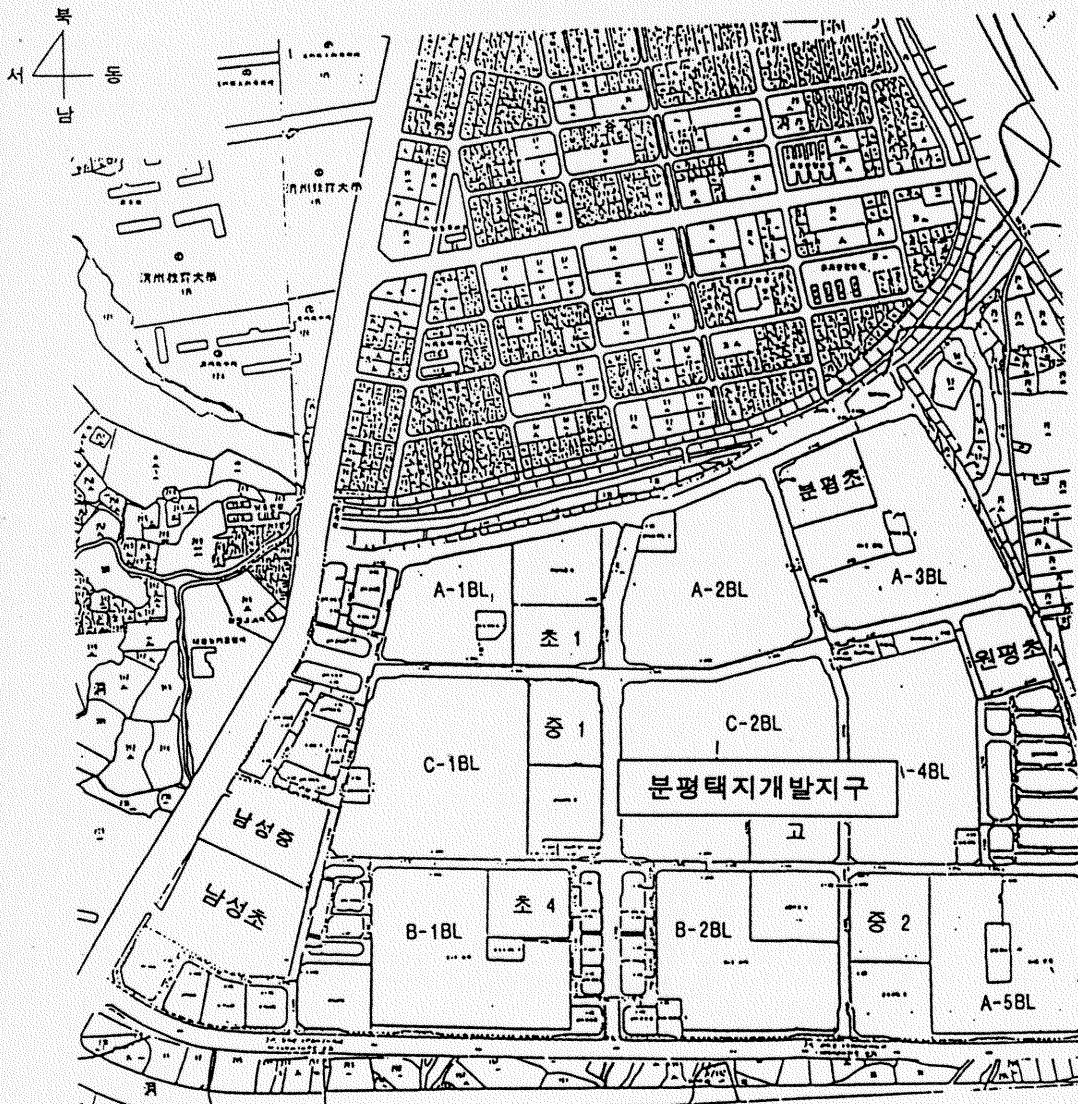
### (가칭)상암초등학교 토지취득 위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학교부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328	학	10,954.8	2,372,940	'98년도 개교 예정 (30학급 1,166명)



## (가칭)원평초등학교 토지취득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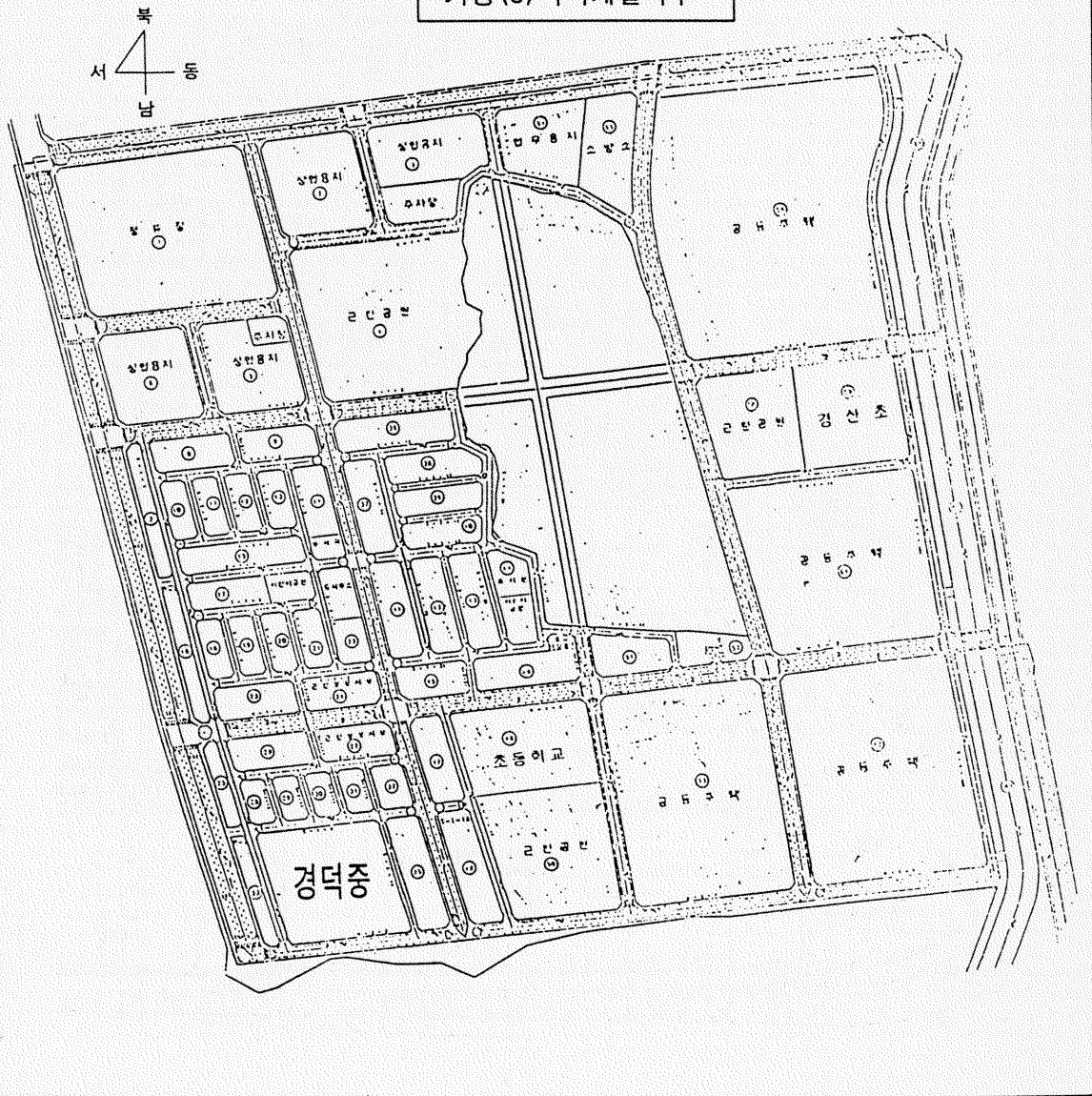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학교부지	청주시 흥덕구 분평개발지구		학	11,249.4	2,842,582	'98년도 개교 예정 (30학급 1,278명)



(가칭)경덕중학교 토지취득 위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학교부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 3지구		학	15,836	7,058,327	'98년도 개교 예정 (개교 11학급 501명 완성 36학급)

가경(3) 택지개발지구





## 강천초등학교단암분교장 재산처분계획

### 1. 학교 연혁

- 개교 년월일 : 1964. 3. 2.
- 폐교 년월일 : 1995. 3. 1.

### 2. 처분재산내역 : 총 340,736 천원

○ 토 지 ( 단위 : m<sup>2</sup>, 천원 )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금 액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	412-2	학교용지	1,253	16,916
	137-4	"	701	9,814
	412-1	"	4,182	50,602
	411-3	대 지	1,772	20,910
	411-6	"	258	3,044
	411-4	"	413	4,956
	412-5	전	129	827
	413-1	"	2,466	17,533
계	8 필지		11,174	124,602

○ 건 물 ( 단위 : m<sup>2</sup>, 천원 )

소 재 지	용 도	구 조	건축년도	면 적	금 액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 412-1	교 실	시.벽.슬	1988	486	153,576
	숙 직실	"	1971	35.17	5,838
	사 택	"	"	43.2	6,739
	"	"	1969	24.79	3,570
	"	"	1985	38.11	7,088
	"	"	1976	49.38	13,333
	창 고	"	1972	25.19	3,325
	급 식소실	"	1987	44.25	12,523
	화 장실	시.벽.슬	1968	14.44	838
	"	시.벽.슬	1990	26.4	6,494
계	10 등			786.93	213,324

## ○ 공작물

( 단위 : 식,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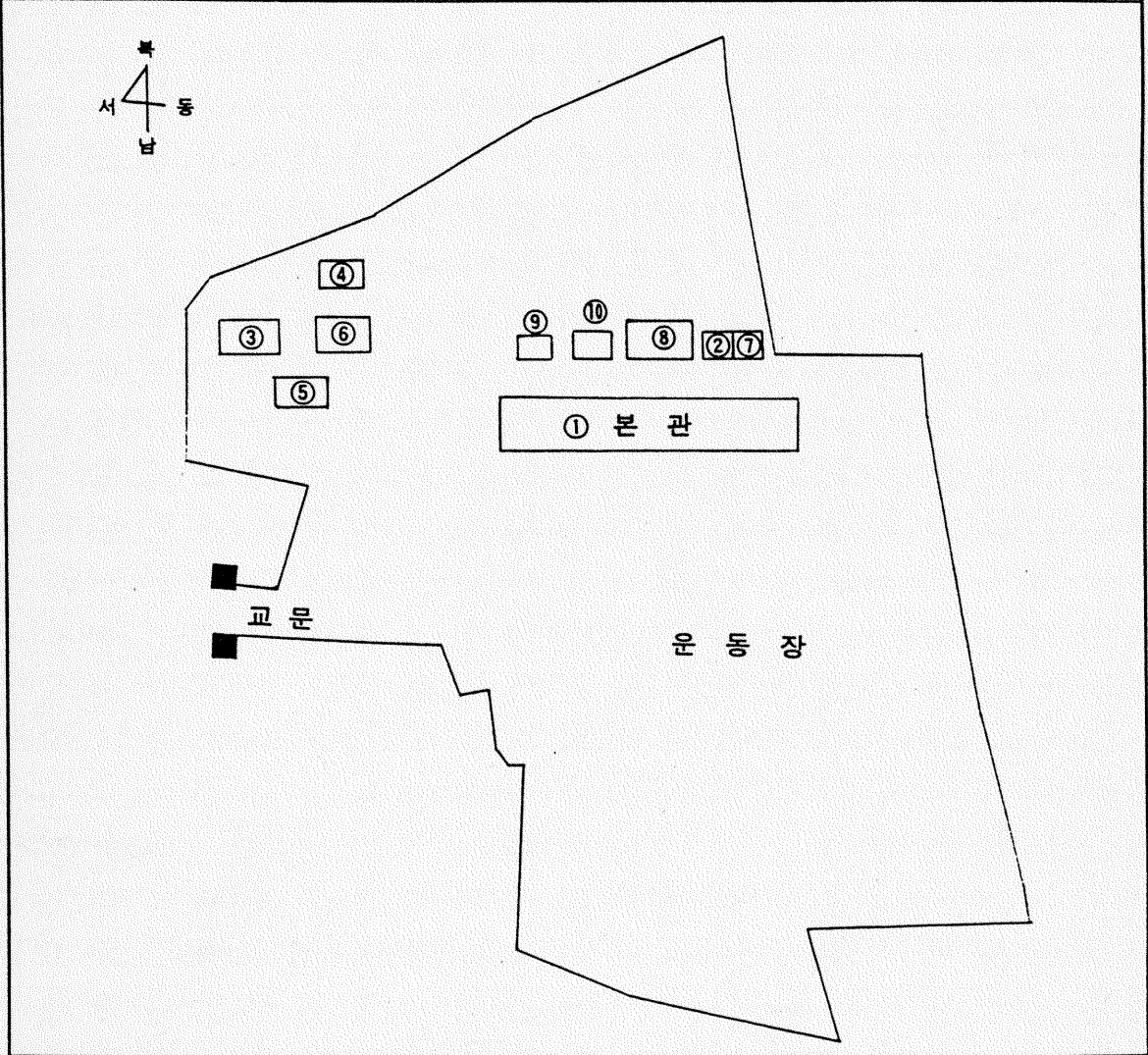
소 재 지	용 도	수 량	금 액
충주시 양성면 단암리 412-1	문	1	1,000
	담	1	700
	수 배 도	1	1,000
	수 로	1	50
	포장(진입로)	1	50
	놀이 기구	25	10
계	6 종		2,810

## 3. 처분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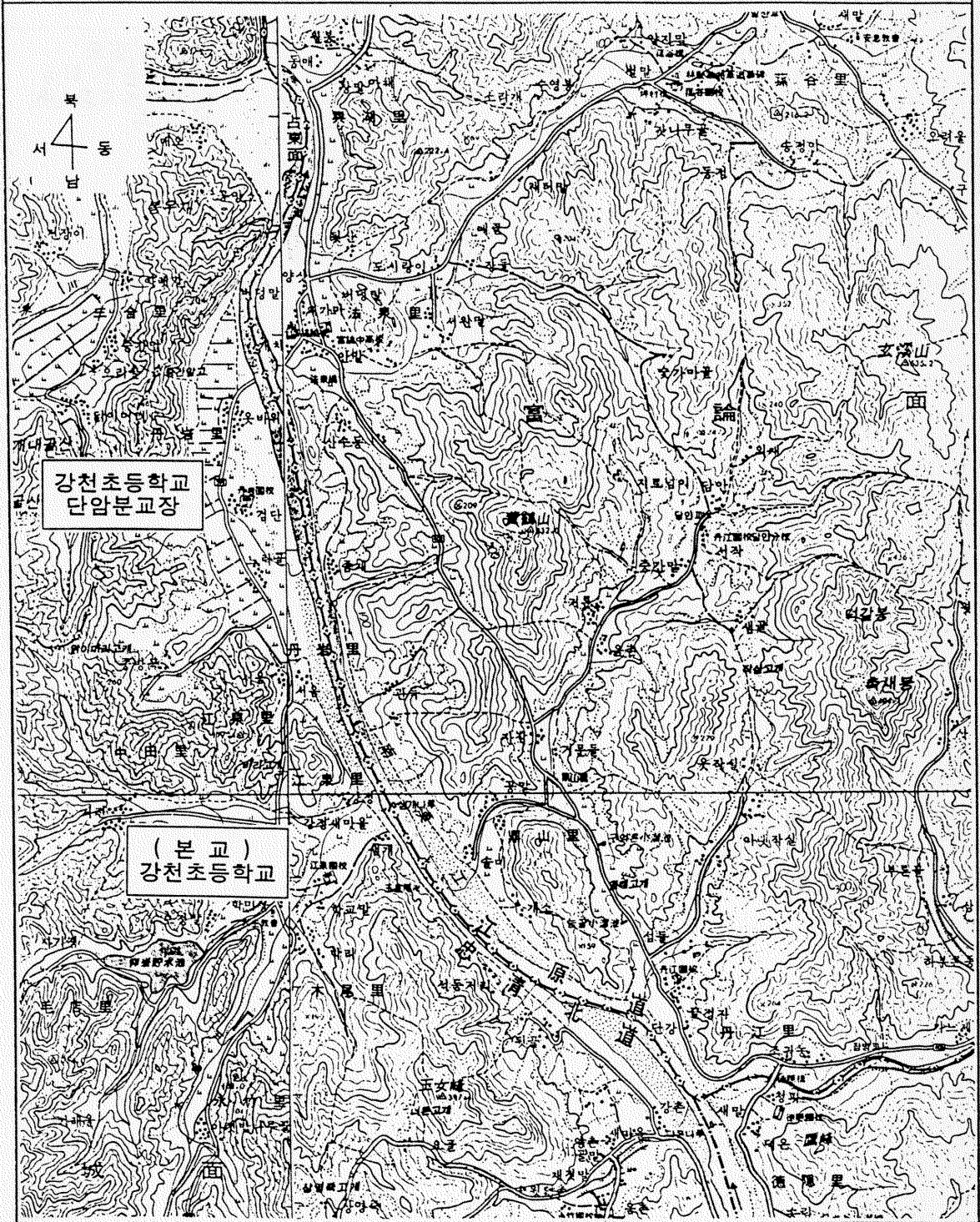
1995. 3. 1.자 폐교된 이후 현재는 임대를 하고있으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으며, 종교단체에서 양로원을 설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입요청하였기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금으로는 충주지역의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전액 투자하여 교육환경의 개선을 기하고자 함.

### 강천초등학교단암분교장 건물처분 배치도

건물번호	용도	구조	건축년도	면적(㎡)	금액(천원)	비고	
1	교실 직사 · · · · · · · · · 창급식장 화장실	시·벽·슬 · · · · · · · · · 시·벽·스 시·벽·슬	1988	486	153,576	○ 보존 불필요 ○ 매각대금은 학생 수용시설확충사업 에 투자	
2			1971	35.17	5,838		
3			"	"	43.2		6,739
4			1969	24.79	3,570		
5			1985	38.11	7,088		
6			1976	49.38	13,333		
7			1972	25.19	3,325		
8			1987	44.25	12,523		
9			1968	14.44	838		
10			1990	26.4	6,494		
계	10 등			786.93	213,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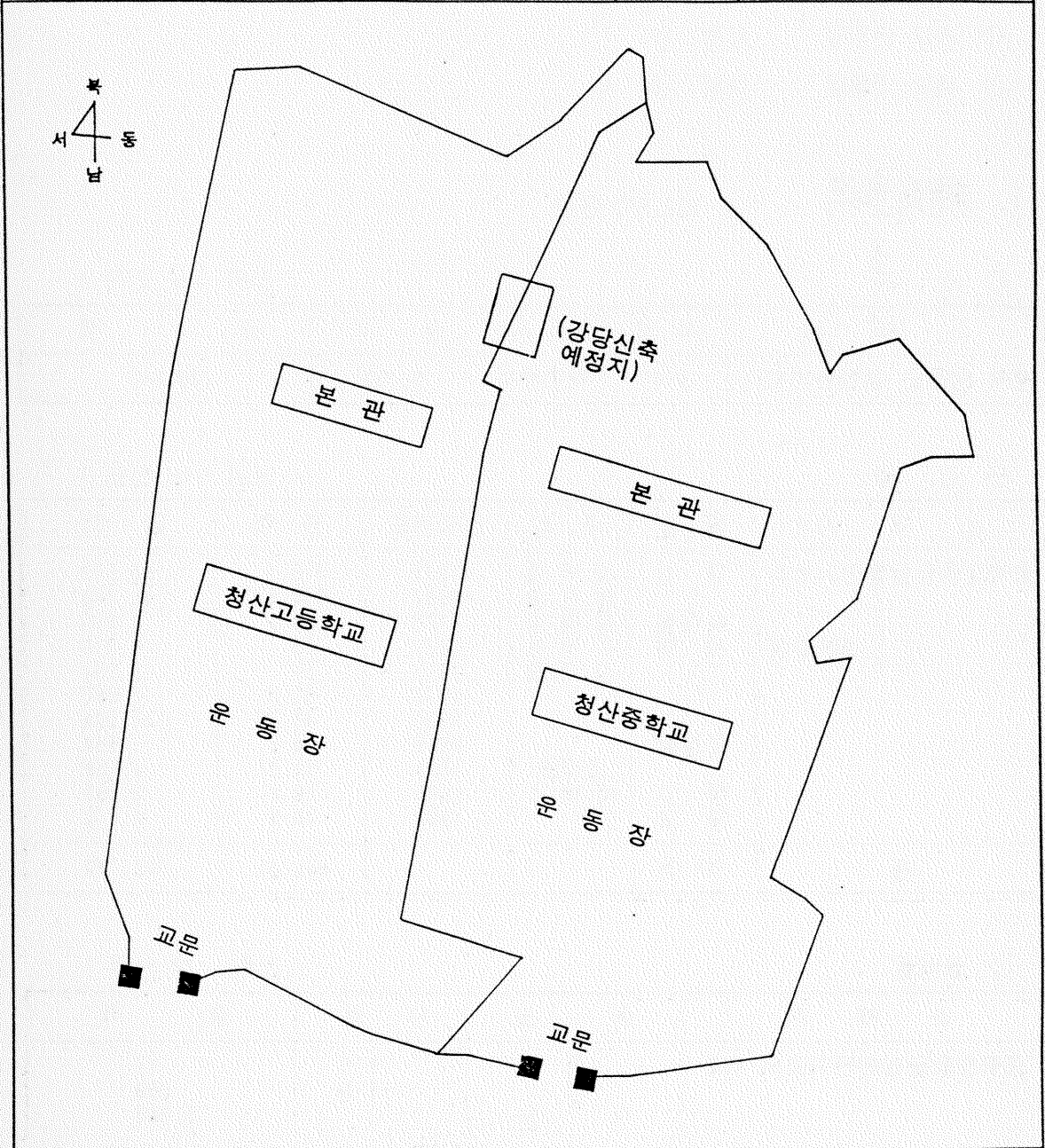


# 강천초등학교단암분교장 위치도



## 청산중학교 건물취득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강당	충북옥천군청산 면백운리	333-3	철.콘. 판넬	708	593,340	교육환경개선 (국고지원사업)



## 초강초등학교금호분교장 재산처분계획

### 1. 학교 연혁

- 개교 년월일 : 1946. 10. 1.
- 폐교 년월일 : 1995. 3. 1.

### 2. 처분재산내역 : 총 252,563 천원

- 토 지 ( 단위 : m<sup>2</sup>, 천원 )

소 재 지	자 번	지 목	면 적	금 액
충북 영동군 심천면기호리	400	학교용지	9,123	136,845

- 건 물 ( 단위 : m<sup>2</sup>, 천원 )

소 재 지	용 도	구 조	건축년도	면 적	금 액	
충북영동군심천면기호리  400번지	교 실	시.벽.슬	1971	370.2	33,502	
		철.콘.슬	1987	240.57	46,189	
	숙직실	시.벽.슬	1972	39.6	2,455	
		시.벽.스	1971	33	1,914	
	사 택	시.벽.슬	1975	27	3,132	
		"	"	1976	30.5	3,660
	화장실	"	"	1990	49.76	12,688
		"	"	1969	14.8	688
	창 고	조적조	"	1989	11.88	1,568
			시.벽.스	1985	19.8	2,069
	차 고	"	"	1988	18.3	1,875
계	11 동			855.41	109,740	

- 공작물 ( 단위 : 식, 천원 )

소 재 지	용 도	수 량	금 액
충북영동군심천면기호리 400	문 답 수 도	1	17
		175 M	860
		2	5,042

## ○ 공작물

( 단위 : 식,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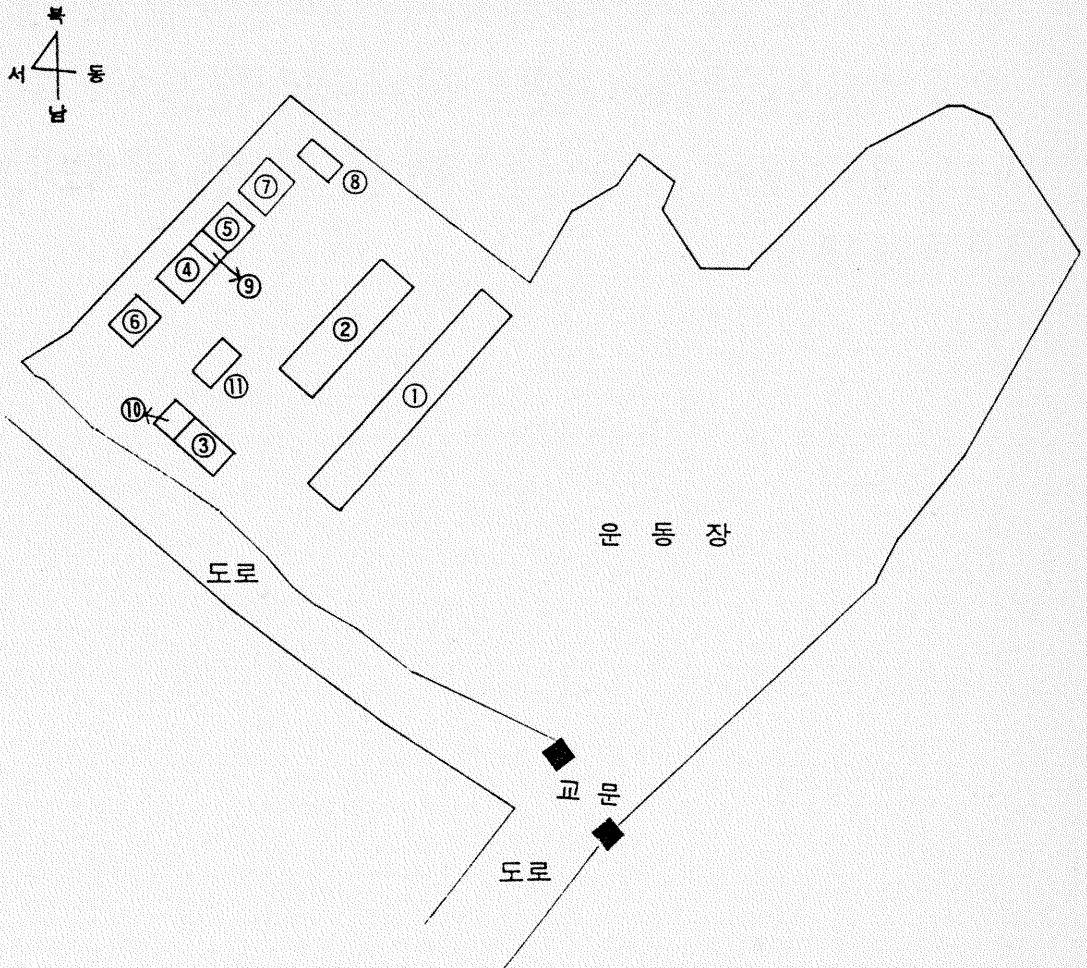
소 재 지	용 도	수 량	금 액
	조 회 대 소 상	1 2	11 48
계	5 종		5,978

## 3. 처분 사유

1995. 3. 1.자 폐교 이후 지역주민에게 위탁관리하므로써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학교법인금강학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수련시설로 매입요청하였기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금으로는 이미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교직원연립사택 확보사업에 전액 투자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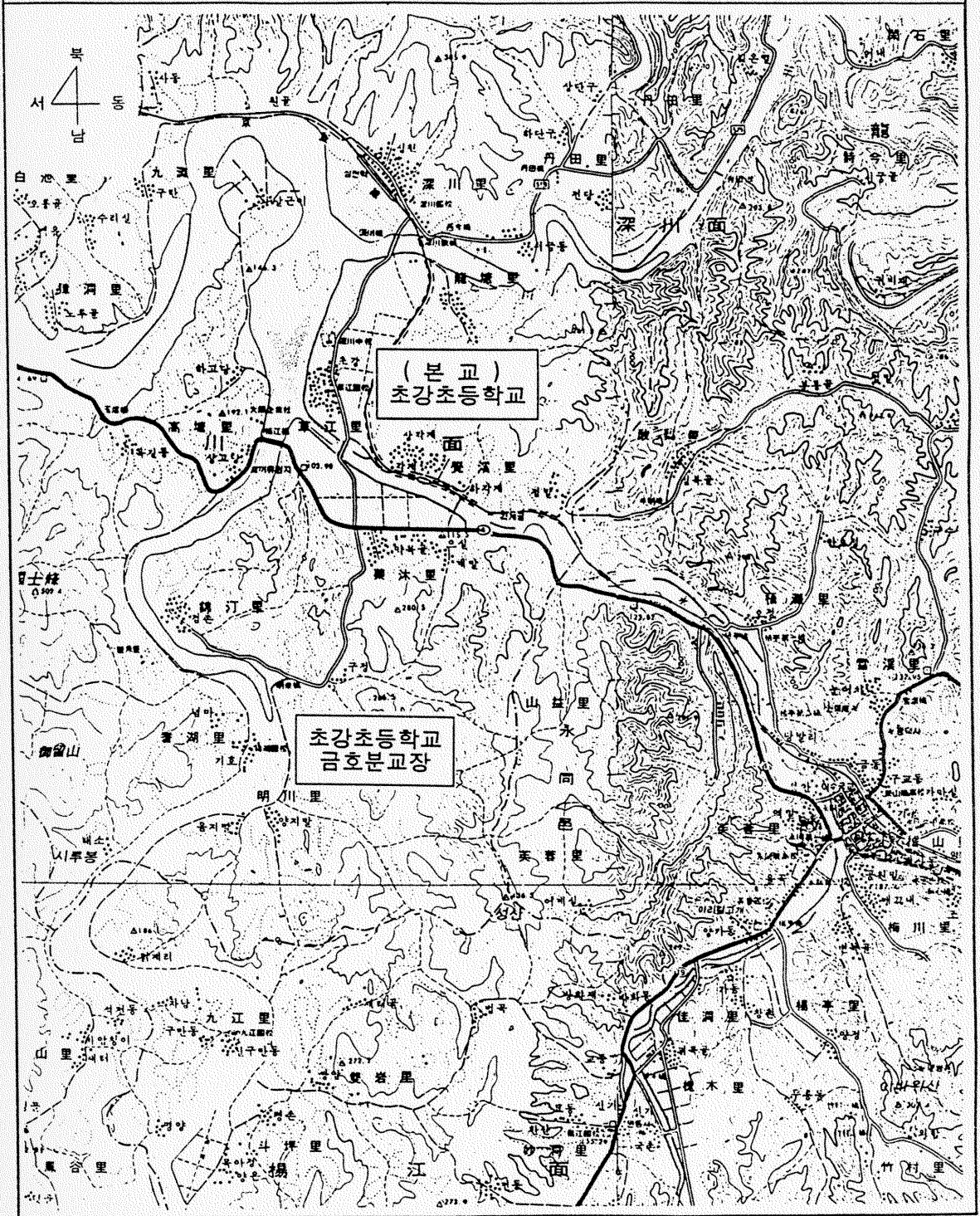
### 초강초등학교금호분교장 건물처분 배치도

건물번호	용도	구조	건축년도	면적(m <sup>2</sup> )	금액(천원)	비고
1	교실	시.벽.슬	1971	370.2	33,502	○ 보존 불필요 ○ 매각대금은 교직원 연립사택 확보사업 에 투자
2	"	철.콘.슬	1987	240.57	46,189	
3	숙직실	시.벽.슬	1972	39.6	2,455	
4	사택	시.벽.스	1971	33	1,914	
5	"	시.벽.슬	1975	27	3,132	
6	"	"	1976	30.5	3,660	
7	"	"	1990	49.76	12,688	
8	화장실	"	1969	14.8	688	
9	"	조적조	1989	11.88	1,568	
10	창고	시.벽.스	1985	19.8	2,069	
11	차고	"	1988	18.3	1,875	
계	11 동			855.41	109,740	





# 초강초등학교금호분교장 위치도





(별첨4)

의안번호	관련 제65-1호
의결 년월일	1996. 8. . (제 회)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자	이경운 교육위원 외 3인
발의년월일	1996년 8월 14일

#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65-1호
----------	--------------

발의년월일 : 1996년 8월 14일

발 의 자 : 이경운 교육위원  
의 3인

## 1. 수정이유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충주교육청 소관 강천초등학교단암분교장(폐지학교)의 재산매각계획은 현장을 답사하여 살펴 본 결과, 인근에 강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교통등 지리적 여건이 양호하여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재산을 매각할 경우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매각 계획수립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장차 지역개발 등으로 재산가치가 한층 증가될 전망도 있으므로,

등 재산을 매각하기보다는 청소년 수련장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임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관리 및 보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등변경계획안중 충주교육청 소관 강천초등학교단암분교장의 재산매각계획은 이를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충주교육청 소관 폐지학교인 강천초등학교 단암분교장의 토지(11,174㎡, 124,602천원)와 건물(786.93㎡, 213,324천원), 공작물(6종, 2,810천원)의 매각계획은 이를 삭제함.

3. 수정안 : 따로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 충주교육청 소관 폐지학교인 강천초등학교 단암

분교장의 토지(11,174㎡, 124,602천원)와 건물(786.93㎡, 213,324천원), 공작물(6종,

2,810천원)의 매각계획은 이를 삭제한다.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회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기관명 : 충주교육청

(단위 : m/천원)

구 분	재 산 별	학 교 명	사 업 명	①원안(변경계획안)		② 수정안		③ 증 감(②-①)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처 분	토 지	강천초교 단암분교장	폐교재산 매각	11,174	124,602	0	0	△ 11,174	△ 124,602
	건 물	"	"	786.93	213,324	0	0	△ 786.93	△ 213,324
	공 작 물	"	"	(6종)	2,810	0	0	△(6종)	△ 2,810
계					340,736	0	0		△ 340,736